

# 항만보안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방안

이정훈\* · 이민형\*\* · 김성우\*\*\*

## 요 약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면서 북한의 대남도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만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국제범죄의 증가와 기법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부터 국내로의 위협요소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안 활동이 항만과 인접 해상구역에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보안의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항만보안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만보안 인력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정립 되어 있어야 한다.

항만 또한 국가중요시설로서 이에 대한 위협과 안전사고 방지 및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안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선결조건이 바로 보안인력의 전문화이며,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의 배출은 바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행 항만보안 인력에 대한 교육체계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며, 항만보안의 특수성에 맞춘 교육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항만보안 인력의 전문화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첫째, 항만보안에 대한 일원화·체계화 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항만보안 교육지침이 수립되어야 하며, 둘째, 항만보안 인력의 업무별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만보안 인력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관련 자격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Training System for the Specialization of Port Security Guard

Lee Jung Hun\* · Lee Min Hyung\*\* · Kim Sung Woo\*\*\*

### ABSTRACT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 port security is very important owing to the geographic setting of Korea and the possibility of the provocation by North Korea. In addition, The security management is necessary for the port and the domain of maritime to block the inflow from overseas because of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crime as terrorism.

The training system for port security guard should be constructed to secure the specialization of the manpower for the efficient port security management.

But the training system of port security manpower is not unified and the training is not carried ou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raining system of port security manpower.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plan of training system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unification of the legislation of port security should achieved to establish the guidance of training for port security guard. Second, the specialized training per activities should be done. And lastly, the qualific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for the specialization of port security manpower.

**Key words : Port Security, Security Guard, Maritime Security, Training, Security Management**

접수일(2014년 9월 11일), 수정일(1차: 2014년 10월 15일),  
계재확정일(2014년 10월 20일)

\* 영남이공대학교 경찰사이버전공(주저자)

\*\* 대구예술대학교 경호보안전공(교신저자)

\*\*\* 동명대학교 군사학과(교신저자)

## 1. 서 론

국제사회는 테러리즘 등 새로운 형태의 위협요소 증가로 인해 광범위하면서 대량살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면서 북한의 대남도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만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국제범죄의 증가와 기법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부터 국내로의 위협요소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안활동이 항만과 인접 해상구역에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항만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일원화된 시스템의 구축과 그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법령과 그 법령별로 다른 담당부서에서 항만의 안전과 보안은 중복되는 부분과 미흡한부분이 함께 존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항만물류의 안전과 보안을 담당할 부서를 명확히 하여 그 역할을 정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항만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해야 할 일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담긴 단일한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1].

그리고 항만보안의 효율화가 비용절감으로 비추어지고 있으며, 항만보안업무는 경비업체에 위탁되고 있는 추세로 인해 저비용 고효율의 특수경비업체의 활용으로 인하여 항만보안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항만보안 인력은 청원경찰과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력구성의 이원화로 인하여 항만보안에 대한 전문성과 결합력이 떨어질 수 있어 보안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2].

이러한 문제가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항만보안의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항만보안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만보안 인력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만보안 인력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항만보안업무에 특화된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항만보안의 이론적 논의

### 2.1 항만보안의 의의

「항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이러한 항만은 물류유통에서 외국과 우리나라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상물류에서 육상물류로 연결되는 연결점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출입과 정박, 여객과 화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승·하선, 선박에 실을 화물과 선박에서 내린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3].

이에 따라 항만은 국가중요시설로서 테러리즘, 불법무기류의 유통, 마약유통, 밀항, 밀수, 납치, 항만 시설 등의 파괴행위, 부두근로자의 소요사태, 화물의 임의조작 및 비인가자의 침입 등의 위협요소가 존재하게 된다[4].

그러므로 항만에서의 위협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통한 2차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항만보안”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보안이란 용어는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접근 제어를 통해 안전을 도모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불의의 행위나 영향으로부터 침입 상태를 보증하는 보호 기준의 확립과 유지 보수의 결과를 낳는 상태 또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국제 보안을 지키는 공식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라 정의한다[5].

이를 토대로 볼 때 항만보안(port security)이란 항만과 인접 해상구역의 방호(protection), 법집행(law and treaty enforcement), 대테러 활동(counterterrorism activities)으로서 항만 그 자체의 방호와 더불어 항만을 경유하는 화물의 보호와 감시 및 인접 해상보안(maritime security)을 포함하는 개념이며[6], 항만에 대한 위협요소의 접근통제를 통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보안은 인접 해상 및 항만보호구역 내에서의 경계·순찰·방비 등 위협요소로부터 항만시설과 물류

및 인적 구성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만특수 경비업무와 인적·물적 위협요소의 내륙으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보안검색업무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 2.2 현행 항만보안법제

### 2.2.1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훈령 제2009-300 호)」은 보안업무규정과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항만(항만보호구역)의 경비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보호구역의 경비·보안책임은 지방해양항만청장과 항만관리법인에게 있으며,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관할 항만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항만보호구역에서의 민유시설주 및 항만시설임대계약자가 전용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책임 하에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만관리법인은 지방청장으로부터 항만보호구역의 경비·보안 관련 업무와 그 지휘권을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항만보호구역의 경비·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통합방위지침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적정수준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의 신·개축 등으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보안담당기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청장은 당해 항만보호구역의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비·보안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일원화하여야 하며, 당해 항만의 경비본부장이 된다. 또한 항만관리법인에게 경비·보안 관리 업무와 그 지휘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항시 항만경비·보안상황을 파악·통제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경비·검색업무 수행자의 경비근무요령에는 경비인력의 적정 교대근무제 및 복제의 통일, 할당된 경비책임구역 입초 경비, 경비근무일만수칙 게시 및 준수, 장소별 특별경비수칙 제정 시행, 신원미상자 접근 방지 및 위협요소 제거, 출입자 및 차량의 통제, 구역내 안전조치 및 화기단속, 무단 접근선박 통제, 경비감독과 순찰계획에 의한 주기적 순찰

(불시순찰 포함)실시, 순찰로는 지형, 지물, 취약부문, 특별보호 구역을 분석결정, 야간에는 초소간 릴레이식 유선점검을 실시하여 경비의 이상유무 확인, 유사시 보고계통에 의한 긴급보고, 근무일지, 출입자기록부, 차량기록부 기록유지 및 근무종료 후 책임자에게 보고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적의 도발, 불순분자의 국내침투 또는 첩보에 따라 항만보호구역에 대한 특별경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단계별 상황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 1> 항만보호구역의 특별경비

단계별	상 황	조 치 사 항
3단계	시설소재지 도내 침투시	1) 경비요원 비상소집 및 경비배치 보완 2)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3) 항만시설내 상주 군경부대 및 외곽방호 군경부대의 협조 점검 4) 군경 및 지역예비군 지원계획 파악 5) 경비통신망 점검유지 6) 시설과괴시 피해방지대책과 거부계획의 검토
2단계	시설소재지 인접시·군에 침투시	1) 직장예비군의 비상배치 2) 지원병력 배치 3) 무기지급 4) 위협 또는 주요부문 소산
1단계	시설지역내 침투시	1) 진병력 전투임무수행(중요심장부 고수 방어, 적투입로 차단 섬멸작전) 2) 시설주요부품의 반출 또는 거부계획의 시행 3) 무기탄약지급

출처 :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 제6조.

### 2.2.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8호)」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마다 항만의 보안에 관한 종합계획(국가항만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항만의 보안에 관한 기본방침, 항만의 보안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항만의 보안에 관한 행정기관의 역할, 항만의 보안에 관한 항만시설소유자의 역할, 항만에서의 보안시설·장비의 설치 및 경비·검

색인력의 배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보안사건에 대한 대비·대응조치, 항만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그 밖에 항만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이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의 구조 및 기능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1인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지정하거나 1개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2인 이상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검색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신축·증축·개축하거나 설치하고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제항해여객선에 승선하는 자는 신체·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하며, 보안검색은 해당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가 실시한다.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때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소유자가 실시하는 보안검색 중 신체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의 업무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장이 지도·감독하고, 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에 대하여는 관할 세관장이 지도·감독한다.

### 3. 항만보안 인력운용과 교육체계

#### 3.1 항만보안 인력의 운용

항만시설의 보안주체는 항만시설의 운영주체이며, 공용부두는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항만공사, 임대부두는 임차인, 사설부두의 경우 사설부두의 운영주체가 보안주체이다[7].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항만공사는 보안활동을 위해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거나 외주 용역업체를 활용하며, 지방해양항만청이 직접 운영하는 항만과 부두의 경비보안인력은 대부분 청원경찰이다. 그러나 부산 및 인천항만공사는 경비보안업무를 자회사로 설립한 항만보안공사에 위탁하였다. 두 항만공사는 2008년 1월 1일부터 항만경비업무와 화물보관업무를 분리하여 경비업무는 항만공사가 출자하는 항만보안공사에 위탁하였다[8].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항만보안부서는 항만안전기획팀이며, 여기에는 팀장 포함 7명의 직원이 항만안전기획을 담당하고 있다[9]. 또한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운영본부 산하 안전보안팀이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보안팀장을 포함하여 총 6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 보안총괄, 위기/재난 대응 및 안전사무, 보안감사 및 문서보안, 항만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10].

그리고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업자인 부산항보안공사의 경우 보안본부 내에 항만종합상황실과 보안운영팀 및 4개의 지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11], 부산항보안공사 경영공시에 따르면 대장 10명, 반장 53명, 조장 70명, 조원 145명을 포함하여 총 278명이 보안요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인천항보안공사의 경우 보안본부 산하 종합상황실, 보안운영팀, 보안교육대, 보안 1-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12], 경영공시에 따르면 청원경찰 131명, 특수경비원 34명의 총 165명이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2012년도 기준 청원경찰 59명과 특수경비원 92명이 배치되어 있다[13].

#### 3.2 현행 항만보안 인력의 교육체계

##### 3.2.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상 교육훈련

본법 제39조에 따르면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보안책임자)와 보안책임자 외의 자로서 항만시설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자(보안담당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로 하여금 항만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보안훈련을 실시

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 시설소유자는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보안훈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안훈련의 간격은 18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2> 보안교육훈련 내용

구분	교육훈련 내용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 교육훈련	1)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2)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국가보안기관의 책임과 기능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보안평가에 관한 사항 4)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관한 사항 5) 보안장비의 종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6)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상 위협의 유형, 대응방법 및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7) 보안사건에 대한 준비 및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8) 보안 관련 정보의 취급 및 통신 요령에 관한 사항 9) 보안 행정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0) 무기 등 위험물질의 탐지에 관한 사항
합동보안 훈련	1) 파괴행위로부터 항만시설이나 국제항해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 2) 국제항해선박 또는 승선자의 납치 또는 강탈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 3)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의 설비, 화물 또는 선용품을 이용한 보안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4)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폭발물 또는 무기류의 밀수나 밀항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 5) 항만출입구, 갑문 또는 진입수로 등의 봉쇄에 관한 훈련 6) 핵무기나 생화학 공격에 대비한 훈련

출처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1항 및 6항.

### 3.2.2 「청원경찰법」 상 교육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따르면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신입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주 76시간이다. 또한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청원주는 항만운영의 주체로서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항만공사 등이라 할 수 있다.

<표 3> 청원경찰 신입교육 과목 및 시간

학과별	과목	시간	
정신교육	정신교육	8	
학술교육	형사법	10	
	청원경찰법	5	
실무교육	경무	경찰관직무집행법	5
	방법	방법업무	3
		경범죄처벌법	2
	경비	시설경비	6
		소방	4
	경보	대공이론	2
		불심검문	2
	민방위	민방공	3
		화생방	2
		기본훈련	5
		총기조작	2
		총검술	2
		사격	6
술과	체포술 및 호신술	6	
기타	업교·수료 및 평가	3	

출처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표 1].

### 3.2.3 「경비업법」 상 특수경비원의 교육

본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입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 따라 특수경비원의 신입교육은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표 4> 특수경비원 신입교육 과목 및 시간

구분 (교육시간)	과목	시간
이론교육 (15시간)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청원경찰법」	8
	「헌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 범죄 및 현행법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4
	범죄예방론(신고요령)을 포함한다)	3
실무교육 (69시간)	정신교육	2
	테러 대응요령	4
	폭발물 처리요령	6
	화재대처법	3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3
	출입통제 요령	3
예절교육	2	

	기계경비 실무	3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6
	시설경비요령(야간경비요령을 포함한다)	4
	민방공(화생방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6
	총기조작	3
	총검술	5
	사격	8
	체포·호신술	5
	관찰·기록기법	3
기타(4시간)	입교식·평가·수료식	4
계		88

출처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 관련 [별표 4].

### 3.3 현행 교육체계 상의 문제점

현행 법체계 상 현장에서 항만보안업무를 담당할 인력에 대한 교육은 경비업법 상의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입교육과, 청원경찰법 상의 신입교육에 근거하고 있다.

항만보안의 경우 인접해역과의 관계와 위협요소가 해상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보안감독자와 교관에 대한 교육 또한 그에 적합하게 체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여객선터미널의 보안·검색 업무에 치중한 육상에서의 경비업무 위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정립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항만 및 해상보안에 대한 근거법률이 미비되어 있으며, 항만법에 따른 보안인력에 관한 교육훈련지침 또한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항만보안교육 관련 지침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의 교육 관련 근거 규정을 보완하여 항만보안업무를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 4. 항만보안 교육시스템 개선방안

### 4.1 항만보안 교육지침 수립

현재 「항만법」 상 항만보안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항만보안의 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등에 개별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항만보안 인력은 항만운영 주체의 보안담당 직원과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이 그 주를 이루게 된다.

이와 유사한 체계로서 공항의 경우에도 공항의 경비와 보안검색업무는 공항운영주체 소속 보안담당직원과 특수경비원이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공항의 보안요원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항공보안법」 제28조 1항 및 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수행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보안검색 업무를 감독하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원 교육을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받았다 하더라도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검색방법, 검색절차, 검색장비의 운용, 그 밖에 보안검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예규로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보안업무 담당자를 공항보안책임자, 공항보안감독자,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항공경비감독자, 항공보안교관, 사내보안교관, 보안검색요원, 항공경비요원, 폭발물처리요원, 폭발물 위협분석관, 항공안전보안장비 유지보수요원 등으로 분류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공항운영 주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각 보안책임자, 감독자, 교관, 요원 등의 자격기준과 교육과정의 종류, 과정별 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최소 이수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만보안 영역 또한 국제적 수준에 맞는 항만보안체제 유지와 현장적응력이 강한 전문 보안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항만법」 상에 항만보안규정을 신설하거나 항만보안에 관한 일반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그 교육지침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경우 해당 근거 법률에 따라 일반적인 경비업무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항만보안에 특화된 교육이 신규 채용 시부터 재직하는 동안 각 교육기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경비지도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항만보안의 특성에 맞는 감독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항만보안요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항만보안 교관 및 감독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

고 자격인증을 받은 자가 교육 및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4.2 분야별 특화된 교육과정 수립·실시

항만보안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채용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교육의 대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교육과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먼저 항만보안책임자, 항만보안감독자,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항만경비감독자, 항만보안교관, 사내보안교관, 보안검색요원 또는 항만경비요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항만운영주체가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5> 보안담당 인력 분류 예시

직렬 구분	정 의
항만보안책임자	항만안전 및 보안업무 등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자로서 항만운영자가 지정한 자
항만보안감독자	항만안전 및 보안업무 등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항만보안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항만운영자가 지정한 자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항만경비감독자	보안검색요원 또는 항만경비요원의 업무 수행실태 등을 감독하는 자로서 항만운영자가 지정한 자
항만보안교관	항만전문교육기관 및 보안검색기관에서 교육 및 강의를 담당하는 자
사내보안교관	항만운영자 등이 자체 보안계획에 의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사내직원
보안검색요원	불법방해행위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자
항만경비요원	항만 내의 중요시설 또는 선박 등을 보호하고, 보호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와 승객 아닌 자 및 물품 등에 대한 검색 또는 신원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

<표 5>에 따른 분류에 따라 각 직렬별로 교육훈련 목표 및 기본방향, 교육과정의 종류, 과정별 내용 및 교육시간, 각 과정별 교육 최소 이수 요건, 집체교육 또는 원격교육 등의 교육 및 평가방법, 위탁교육 훈련 관련 사항, 자격인증 절차 및 인증평가 세부기준 등에 대한 기본 지침이 마련되어 이를 토대로 한 분야별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수립되어야 한다(<표 6> 참조).

<표 6> 항만보안 교육과정 예시

구분	내 용
초기교육	항만보안 관련 신규 채용자 또는 최초 임명자 등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이전에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
직무교육	초기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업무의 시범 및 관찰과 실제업무의 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
정기교육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4.3 항만보안관련 자격제도 도입

현행 법제상 보안관련 국가자격시험제도는 경비지도사가 유일하며, 이는 경찰청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항만보안 등 해양안전 및 경비에 관한 국가자격시험제도는 그 근거 법률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자격시행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양안전 및 경비와 항만보안에 관한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항만보안 담당 요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지식을 채용 전에 함양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항만보안 인력에 대한 채용 후의 직무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더불어 항만보안 인력의 전문성을 검증하고, 채용 전 기본적인 지식을 겸비한 인력을 배출하도록 하여 국가중요시설로서의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 프레임의 초석이 될 것이다.

현재 항만보안 분야의 인력 구성은 항만운영주체의 위탁을 받은 민간 특수경비업 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상경비 및 항만보안의 특성을 반영하고, 해양경비의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민간경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14].

따라서 전반적인 해양안전과 해상에서의 경비 및 항만보안의 특수한 업무를 사적 법인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가칭)해양경비업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경비사” 또는 “해양안전관리사”와 같은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1급은 경비 및 보안검색요원을 관리·감독 및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2급은 경비 및 보안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여기에서의 “해양경비업”은 대한민국의 해상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감독을 받아 불법어업 감시 및 해상에서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해상특수경비와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만경비 및 보안검색 등의 업무를 관할 부처의 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5. 결 론

우리나라는 분단 조국의 특수한 상황 하에 놓여 있으며, 테러리즘 등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국제적으로 다변화되어 증가하고 있다.

항만 또한 국가중요시설로서 이에 대한 위협과 안전사고 방지 및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안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선결조건이 바로 보안인력의 전문화이며,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의 배출은 바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현행 항만보안 인력에 대한 교육체계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며, 항만보안의 특수성에 맞춘 교육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항만보안 인력의 전문화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보안에 대한 일원화·체계화 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항만보안 교육지침이 수립되어야 한다. 교육지침에는 항만보안 인력의 담당업무별·직렬별 분류를 통한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둘째, 항만보안 인력의 업무별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채용시부터 재직하는 동안 보안책임자 및 감독자, 교관, 그리고 보업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에 대한 교육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항만보안 인력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관련 자격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해양경비법”이 제정되어 해양경비 및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험과 교육이 해양안전 및 항만보안의 특수성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항만보안 인력의 교육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양안전 또는 해양경비 및 보안에 관한 법제가 일원화 되고,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민상홍, ‘항만물류의 안전과 보안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 2014.
- [2] 방호삼, 주종광, “우리나라 항만보안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p.172, 2013.
- [3] 민상홍, ‘항만물류의 안전과 보안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6, 2014.
- [4] 변용남, ‘항만보안위협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보안관리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p.7-9, 2009.
- [5]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B3%B4%EC%95%88>, 2014.
- [6]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Port\\_security](http://en.wikipedia.org/wiki/Port_security), 2014.
- [7] 김형태, “항만시설 경비보안체제의 효율화 방안”, 월간 해양수산, 제282호, p.13, 2008.
- [8] 방호삼, 주종광, “우리나라 항만보안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pp.170-171, 2013.
- [9] 부산항만공사, <http://www.busanpa.com/EmpTree.do?flag=list&code=MDNENjM5NEVF>, 2014.
- [10] 인천항만공사, <http://www.icpa.or.kr/introduce/group/402007/view.do>, 2014.
- [11] 부산항보안공사, <http://www.bpsc.co.kr/sub/intro/intro3.html>, 2014.
- [12] 인천항보안공사, <http://www.port.co.kr/company/organization.asp>, 2014.
- [13] 방호삼, 주종광, “우리나라 항만보안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p.171, 2013.



- [14] 진성용, 이은방, “해양경비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해양경비사 제도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9권, 제1호, pp.48-49, 2013.

[저자소개]



**이정훈 (Jung-Hun Lee)**

영남대학교 행정학박사  
영남이공대학교 경찰사이버전공 교수  
관심분야 : 경찰행정학, 민간경비

email : cabbage@ync.ac.kr



**이민형 (Hyung-Min Lee)**

용인대학교 경호학박사  
대구예술대학교 경호보안전공 교수  
관심분야 : 해양경비, 민간경비

email : 1975lmh@hanmail.net



**김성우 (Sung-woo Kim)**

원광대학교 행정학박사  
동명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군사학, 국방정책

email : dragon3541@hanmail.net